

제22대 국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안내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 ~ 6.) 및 선거일(4. 10.)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응

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 붙임 1. 투표소 소란행위 및 투표지 촬영·훼손 등 위반행위 주요 조치사례
2. 유·무효투표 예시

(붙임 1)

투표소 소란행위 및 투표지 촬영·훼손 등 위반행위 주요 조치사례

□ (사전)투표용지 훼손 및 (사전)투표소 소란

- 사전투표소에서 남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소란을 피웠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소란 행위[수원고등법원 2021. 1. 27. 2020노908]
- 사전투표소와 그 앞 복도, 대강당 등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직접 날인되어야 함에도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임의로 휴대전화로 투표소와 투표관리관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약1시간 동안 소란 행위[창원지방법원 2019. 1. 17. 2018고합239]
-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소리를 지르고 투표소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소란 행위[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7. 14. 2020고합11]

□ (사전)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전송

-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8. 2021고합247]
-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SNS에 게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 2020고합76]
-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A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A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제주지방법원 2018. 12. 6. 2018고합158]

(붙임 2) 유·무효투표 예시

유효투표 예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본 예시의 "후보자"는 "정당"으로 봄

01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구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① 표가 일부만 표시되었으나 정구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참신유예 유효)

② 표 인이 배워졌으나 정구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회한유예 유효)

02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배워졌으나 정구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박윤유예 유효)

②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배워진 것 (박윤유예 유효)

※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배워진 경우가 투표용지 기재 되어 있거나, 투표용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형식, 유호용지 또는 투표용지 사용 용도에 따라 투표관리관의 인신인정에 정당하게 고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구의 투표용지로 봄

03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인쇄 되었으나 정구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①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구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안정유예 유효)

②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회한유예 유효)

③ 다른 후보자란이 인위(인두)으로 더해진 것 (김이박유예 유효)

04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①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표를 추가한 것 (검정되지 않은 것) (김이박유예 유효)

②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 표를 한 것 (박윤유예 유효)

05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안정유예 유효)

06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①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것 (박윤유예 유효)

②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친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회한유예 유효)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소중한 한 표 한 표, 정확한 개표관리

유·무효 투표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투표 예시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본 예시의 "후보자"는 "정당"으로 봄

01 정구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정구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기호·성명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02 정구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① 구·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②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구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03 어느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은 것)

04 2명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① 2명에 걸쳐서 기표한 것

②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05 어느 "칸"에 표를 한 것 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투표자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어떤 후보자)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06 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① 표를 하고 문자(졸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문형(○, □, V, X, △ 등)을 기입한 것

②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칭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공명선거

07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① 표를 하지 않고 문자(졸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를 기입한 것

② 표를 하지 않고 문형(○, □, V, X, △ 등)을 기입한 것

※ 기호·성명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08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사명을 기입하거나 인칭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①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사명을 기입하거나 인칭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② 표를 하지 않고 문형(○, □, V, X, △ 등)을 기입한 것

③ 표를 하지 않고 문자(졸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를 기입한 것

※ 기호·성명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우편투표의 유·무효처리

- 우편투표의 종류 관련 무효투표**
- 정구의 최종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봉투가 봉합되지 않거나 개봉한 흔적이 있는 것
 - 봉투가 투표지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것
 - 봉투안에 투표지 외에 편지 메모 등이 들어 있는 것
 - 봉투에 타인의 성명·기호 또는 인상이 날인된 것(기호투표에 한함)
 - 봉투용 봉인(봉합)의 성명·기호 또는 인상이 날인된 것은 유효함
 - 제외투표의 경우 이중투표(복합투표) 표시가 된 것
 - 이중투표(복합투표) 표시가 되지 않았으나 압수 시 이중투표로 확인된 것
- 다음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만 무효처리**
- 봉투안에 같은 선거(구)의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 같은 선거(구)의 투표지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나머지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
 -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기호·성명투표자의 표시방법에 따른 유·무효**
- 유효**
- , □, V, X, △ 등 형태여야 함 불문하고 문형으로 표를 한 것
 - 무인(날인) 한 것
- 무효**
- "졸다", "나쁘다" 등 문자를 기재한 것
 - 도장으로 기표(날인) 한 것

08 공개된 투표지 및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①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②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